중국문화연구소 규정

2008.9. 17.제정2018.6. 20.개정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중국문화연구소(이하 "연구소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소속) 연구소는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에 둔다. (개정 2012.12.31., 2016. 6.16.)
- 제3조(사업) 연구소는 역사·문화적 친연성과 지리적 근접성을 갖고 있는 중국의 세계적 위상을 고려하여 본교 내 중국학 연구의 중심 및 중국교류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며, 한국적 중국학 의 정립을 통해 국내 중국학 연구를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- 1. 중국학 연구 및 중국 교류를 위한 정보자료의 수집과 정리 사업
 - 2. 중국학 연구의 전문화 및 이론심화 사업
 - 3. 중국 교류의 확대와 내실화 사업
 - 4. 학술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사업
 - 5. 중국학연구총서 및 중국학번역총서 발간 사업
 - 6.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- 제4조(소장·부소장)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, 필요한 경우에는 부소장 1인을 둘 수 있다.
 - ② 소장과 부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인문과학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2.12.31., 2016.6.16.)
 - ③ 소장은 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관장하며,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. (개정 2012.12.31.)
- 제5조(조직) ① 연구소에는 중국현대문학문화연구실, 중국사상역사민속연구실, 중국고전상상력연구실, 중국방언도시연구실, 중국지역소수민족연구실, 중국교류학술정보연구실 및 행정실을 둔다.
 - ② 중국현대문학문화연구실은 중국의 현대 문학·문화에 관한 일반 학술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 - ③ 중국사상역사민속연구실은 중국의 사상·역사·민속에 관한 일반 학술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 - ④ 중국고전상상력연구실은 중국의 고전·상상력에 관한 일반 학술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 - ⑤ 중국방언도시연구실은 중국의 방언·도시에 관한 일반 학술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 - ⑥ 중국지역소수민족연구실은 중국의 지역·소수민족에 관한 일반 학술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중국문화연구소 규정

- ⑦ 중국교류학술정보연구실은 중국과의 교류 및 학술·정보 수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⑧ 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타 연구실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.
- 제6조(실장) ① 행정실을 제외한 각 연구실에 실장을 둘 수 있다. 실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인문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2.12.31., 2016.6. 16.)
 - ② 각 실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.
- 제7조(연구위원 등) ①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 - ② 연구위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 회 동의를 얻어 인문과학대학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2.12.31., 2016.6.16.)
 - 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인문과학대학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12.12.31., 2016.6.16.)
 - 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 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 - 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.
- 제8조(연구원 등) ① 연구소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 - 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 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,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.
 - 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.
 - 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.
- 제9조(행정인력) ① 연구소에 두는 행정인력은 인문과학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임면한 다. (개정 2012.12.31., 2016.6.16.)
 - 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연구소의 자체수입으로 충당한다.
- 제10조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중국문화 연구소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인문과학대학장, 소장, 부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인문과학대학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인문과학대학장이 된다. (개정 2012.12.31., 2016.6.16.)
 -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 -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 - 2.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- 3. 연구소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- 4.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

- 5.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- 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1조(사업계획 및 보고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문과학대학장, 연구처장을 거쳐 총 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 (개정 2012.12.31., 2016. 6.16.)
 - 1.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 - 2.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 - 3. 운영위원 명단
- 제12조(경비 및 현금출납) ① 연구소의 경비는 연구기금으로 충당한다.
 - ② 연구소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. (개정 2016.6.16., 2018.6.20.)

부칙 (2008. 9. 17. 제정)

이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2. 12. 31. 개정)

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6. 6. 16. 개정)

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8. 6. 20. 개정)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